

# 특정감사 결과보고

-☒☒지사 복무 및 기관운영 전반-

- 감사기간: 2015. 8. 3.(월)~2015. 8. 7.(금) / 5일간  
2015. 8.18.(화)~2015. 8.21.(금) / 4일간
- 감사인원: 2명
- 지적사항: 20건 [개선1, 회수(지급)4, 징계(문책)15]

2015. 9.

# 목 차

I. 감사실시 개요 .....	1
1. 감사 배경 및 목적 .....	1
2. 감사기관 및 인원 .....	1
3. 감사대상 및 중점사항 .....	1
II. 감사결과 .....	2
1. 지적사항 총괄 .....	2
2. 분야별 지적사항 .....	2
III.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	10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	10
2. 처분요구사항 명세 .....	10

[붙임]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1부.

## 1. 감사 배경 및 목적

이번 특정감사는 e-감사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기관운영 전반에 걸쳐 문제점이 발견된 ○○지역본부 ▣▣지사에 대하여 복무 및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을 하여 부적정한 업무처리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고자 이번 감사를 실시하였음.

## 2. 감사기간 및 인원

- 기관 운영감사: 2015. 8. 3. ~ 8. 7.(5일간)  
2015. 8. 18. ~ 8. 21.(4일간)
- 점검총괄: 감사 2부장 ■■■■
  - 감사자: 차장 ■■■■, 팀장 ■■■■
- 감사범위: 2014. 1. 1.부터 2015. 7. 31.까지의 기관운영 전반

## 3. 감사 대상 및 중점사항

- 대상기관: ○○지역본부 ▣▣지사
-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 기관운영 전반
  - 차량유지관리비 집행 실태
  - 업무추진비 집행 실태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및 사적사용 확인 등
- 복무관리의 적정성
  - 근무시간 중 직장이탈 금지 확인
  - 근태리더기 운영 적정성 여부
  - 출퇴근 기록과 관련 증빙자료 확인 등을 조사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 1.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구분	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현지 처분	제도 개선	모범 사례 (건수)
		통보	시정	개선	권고	회수	지급	중징계	경징계	문책			
건수	20	0	0	1	0	3	1	1	13	1	0	0	0

※ 회수: 차량유지관리비(2,480,000원), 특근매식비(645,000원), 업무추진비(1,140,000원)  
지급: 여비교통비(1,080,000원)

## 2. 분야별 지적사항

### 가. 차량유지관리비 집행 부적정

- ■■■■ ■■■■■■(국토정보직 2급) 등 15인은 2014. 1. 23.부터 2015. 7. 31.까지 차량유지관리비 집행을 부적정하게 하였고 또한 개인 차량을 총 124회(2,480,000원) 세차하는 등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하였음
- 2014. 1. 23.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세차장(■ ■ 카크리닉: ○ ○ ■■■시 □ □ 동 소재) 장부에 따르면 총 131회 2,620,000원, 지사 예산집행 총 196회(지출결의서) 3,920,000원으로 총 65회 1,300,000원을 부당 지출하였음 [표 2] 개인차량 세차 현황 참조
- 2015. 1. 1.부터 같은 해 7. 31.까지의 경우 세차장 장부 총 58회 1,160,000원, 지사 예산집행 총 117회 2,340,000원이 지출되어 총 1,180,000원이 과다 지출하였음(개인세차: 480,000원, 세차장 잔고: 708,000원<sup>1)</sup>)

1) 세차장에서 계산하는 해당 세차 단가(27,500원)와 지사에서 지출하는 단가(20,000) 차이로 인해 8,000원이 상이함.

[표 1] 차량유지관리비 집행 현황(2014. 1. 1. ~ 2015. 7. 31.)

(단위: 횡수/ 원)

구분	세차장장부	지출	초과지출	구분	세차장장부	지출	초과지출
'14. 1월	11 (220,000)	18 (360,000)	140,000	'15. 1월	8 (160,000)	15 (300,000)	140,000
2월	12 (240,000)	16 (320,000)	80,000	2월	10 (200,000)	16 (320,000)	120,000
3월	12 (240,000)	20 (400,000)	160,000	3월	10 (200,000)	19 (380,000)	180,000
4월	11 (220,000)	20 (400,000)	180,000	4월	7 (140,000)	18 (360,000)	220,000
5월	11 (220,000)	20 (400,000)	180,000	5월	12 (240,000)	17 (340,000)	100,000
6월	8 (160,000)	18 (360,000)	200,000	6월	6 (120,000)	16 (320,000)	200,000
7월	11 (220,000)	20 (400,000)	180,000	7월	5 (100,000)	16 (320,000)	220,000
8월	10 (200,000)	10 (200,000)	0				
9월	11 (220,000)	12 (240,000)	20,000				
10월	12 (240,000)	15 (300,000)	60,000				
11월	11 (220,000)	12 (240,000)	20,000				
12월	11 (220,000)	15 (300,000)	80,000				
합계	131 (2,620,000)	196 (3,920,000)	65 (1,300,000)	합계	58 (1,160,000)	117 (2,340,000)	59 (1,180,000)

※ \*\*카크리닉 세차장부와 ☐☐지사 지출결의서(업무비\_차량유지비)에 의함

■ 사내참고

「한국국토정보공사 임직원행동강령」 제8조(법규준수) “임직원은 직무 수행 시 각종 법령과 규정을 지키고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제20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에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되며, 같은 강령 제35조(투명한 회계 관리)에 임직원은 회계기록 그 밖에 재무관리는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표 2] 개인차량 세차 현황(2014. 1. 1. ~ 2015. 7. 31.)

(단위: 세차 횟수/ 원)

년도	성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2014	■■■■■				1			1					1	3/ 60,000
	■■■■					1		1					1	3/ 60,000
	□□□		1	1	1	1		1	1	1	1	1	1	10/ 200,000
	▲▲▲		1						1	1			1	4/ 80,000
	△△△						1	1		1		1		4/ 80,000
	●●●								1	1	1			3/ 60,000
	○○○		1	1		2								4/ 80,000
	●●●			1		1		1		1				4/ 80,000
	▲▲▲		1	1		1	1		1	1		1	1	8/ 160,000
	▶▶▶		1	2	1	2	1	2	2	2	1	2	1	17/ 340,000
	▷▷▷			1		1				1			1	4/ 80,000
	■ ■ ■									1				1/ 20,000
합계														65/ 1,300,000
2015	□□□				1									1/ 20,000
	▲▲▲		1					1						2/ 40,000
	△△△					1	1							2/ 40,000
	▲▲▲		1											1/ 20,000
	▶▶▶	1	1	1	1	1	1	1						7/ 140,000
	▷▷▷		1											1/ 20,000
	▶▶▶		1	1	1	1	1	1						6/ 120,000
	▷▷▷			1	1		1							3/ 60,000
	▷▷▷			1										1/ 20,000
합계														24/ 480,000

※ 자료 재구성: 세차장 잔고와 8,000원이 차이나는 것은 해당 세차 단가 차이로 기인함

나. 여비교통비 집행 부적정

- ■■■■ ■■■■■■(국토정보직 2급)은 2014. 1. 1.부터 2015. 2. 3.까지 향후 체결될 ■■■■ 개인 성과연봉 계약에서 높은 등급의 연봉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지적측량 업무의 일일 완료건수 2건 이하와 완료금액이 1,500,000원 이하일 경우에는 여비교통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가이드라인을 개인적으로 정하여 여비교통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급된 여비교통비를 여입 하게 하는 등 총 15건 900,000원의 여비교통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 □□□□ ▷▷▷(국토정보직 3급)은 2015. 2. 4.부터 같은 해 7. 31.까지 ▨▨▨□□□□으로 근무하면서 ▨▨▨▨▨▨(전임 □□□□)의 업무 스타일을 유지하여 총 3건 180,000원의 여비교통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표 3] 여비교통비 미지출 현황(2014. 1. 1. ~ 2015. 7. 31.)

종목	토지소재지	출장일자	측량자	지출금액			비고
				정	오	차액	
합계	18건			1,080,000	0	1,080,000	
소계(▨▨▨▨▨▨)	15건			900,000	0	900,000	
특현황 24호	▼▼동 366-11	'14. 2. 5.	△△△ 등 3	60,000	0	60,000	미지출
경계 42호	▽▽동 435-108	'14. 2. 19.	▲▲▲ 등 3	60,000	0	60,000	"
경계 285호	▼▼동 산62-16	'14. 5. 7.	▲▲▲ 등 3	60,000	0	60,000	"
경계 299호	▽▽동 299	'14. 5. 7.	△△△ 등 3	60,000	0	60,000	여입
특분할 24호	▽▽동 15-4	'14. 5. 12.	□□□ 등 3	60,000	0	60,000	미지출
분할 204호	◆◆동 398-34	'14. 6. 17.	□□□ 등 3	60,000	0	60,000	"
특분할 59호	◇◇동 82-3	'14. 11. 27.	▬▬▬ 등 3	60,000	0	60,000	"
경계 695호	◆◆면 ◎◎리 390-84	'14. 12. 2.	△△△ 등 3	60,000	0	60,000	"
특분할 61호	◎◎동 397-8	'14. 12. 3.	▬▬▬ 등 3	60,000	0	60,000	"
분할 404	0동 220-5	'14. 12. 8.	□□□ 등 3	60,000	0	60,000	"
분할 475호	⊙⊙⊙동 501	'14. 12. 11.	△△△ 등 3	60,000	0	60,000	"
분할 482호	하사창동 348	'14. 12. 18.	▬▬▬ 등 3	60,000	0	60,000	"
분할 487	⊙⊙⊙동 산329-7	'14. 12. 30.	□□□ 등 3	60,000	0	60,000	"
현황 130호	◇◇동 211-1	'14. 12. 30.	△△△ 등 3	60,000	0	60,000	"
분할 17호	◎◎◎동 435	'15. 1. 28.	▲▲▲ 등 3	60,000	0	60,000	"
소계(▷▷▷)	3건			180,000	0	180,000	
경계 57호	▽▽동 399	'15. 2. 16.	▲▲▲ 등 3	60,000	0	60,000	"
경계 71호	●●동 27	'15. 2. 24.	□□□ 등 3	60,000	0	60,000	"
경계 449호	□□동 510-6	'15. 7. 29.	▲▲▲ 등 3	60,000	0	60,000	여입

다. 특근매식비 부당 집행

- ■■■■ ■■■■■■(국토정보직 2급)은 2015. 1. 1.부터 같은 해 2. 3.까지 차장 ■■■■ 등 총 59명에게 특근을 실시하지 않았는데도 특근매식비 총 404,000원을 부당하게 지출 승인하였음
- ■■■■ ▷▷▷(국토정보직 3급)은 2015. 2. 4.부터 같은 해 7. 31.까지 총 28명에게 특근을 실시하지 않았는데도 특근매식비 총 241,000원을 부당하게 지출 승인하였음
- 서무 ▷▷▷(국토정보직 6급)는 2015. 1. 1.부터 같은 해 7. 31.까지 총 87명 대하여 특근을 실시하지 않았는데도 특근매식비 총 645,000원을 부당하게 지출결의 하였음

[표 4] 특근매식비 지출 현황(2015. 1. 1. ~ 7. 31.) (단위: 명/ 원)

일자	직 급	인원(명)	특근여부	비 고
합계		87		645,000
소계(■■■■■)		59		404,000
2015. 1. 9	국토정보직 3급	■■■■ 등 11	×	86,000
2015. 1. 12	국토정보직 3급	■■■■ 등 11	×	86,000
2015. 1. 13	국토정보직 3급	■■■■ 등 14	×	84,000
2015. 1. 16	국토정보직 5급	●●● 등 8	×	70,000
2015. 1. 19	국토정보직 5급	●●● 등 10	×	42,000
2015. 1. 20	국토정보직 5급	●●● 등 5	×	36,000
소계(▷▷▷)		28		241,000
2015. 2. 4	국토정보직 5급	●●● 등 6	×	39,000
2015. 2. 6	국토정보직 5급	●●● 등 7	×	69,000
2015. 2. 13	국토정보직 4급	□□□ 등 8	×	71,000
2015. 2. 13	국토정보직 4급	□□□ 등 7	×	62,000

[표 5] 개인별 특근매식비 세부 지출 현황(2015. 1. 1. ~ 7. 31.) (단위: 건/ 원)

직·성명	횟수	금액	비고
국토정보직 3급 ■■■■	3	22,000	
국토정보직 4급 ▲▲▲	6	46,200	
국토정보직 4급 □□□	6	42,700	
국토정보직 4급 △△△	9	71,200	
국토정보직 5급 ▶▶▶	7	49,200	
국토정보직 5급 ○○○'	6	48,000	
국토정보직 5급 ●●●	3	18,200	
국토정보직 5급 ●●●'	9	67,200	
국토정보직 5급 ○○○'	3	22,000	
국토정보직 5급 ●●●	4	27,200	
국토정보직 5급 ▲▲▲	6	40,700	
국토정보직 5급 ▷▷▷	1	10,000	
국토정보직 5급 ●●●	9	69,200	
국토정보직 5급 ■■■	3	28,000	
국토정보직 5급 ○○○'	8	58,700	
국토정보직 6급 ▷▷▷	4	24,500	
합계	87	645,000	

※ ○○○', ●●●', ○○○', ○○○' 등 4명(195,900원)은 특근매식비 회수 요건에 해당

■ 사내참고

2015년 예산집행지침 4. 목별 세부지침, 라. 복리후생비, 2), 가)에 의하면 “특근매식비는 직원(3급 이상 연봉제 대상자는 제외하고 보조인력은 포함)이 초과 근무한 날에 한하여 배정된 월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한다.”라고 되어 있다.

라.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 [A][B][C] [D][E][F][G](국토정보직 2급)은 2014년도 [H][I]지사에 업무추진비로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하면서 공사의 사업 및 유관 기관과의 업무추진 활동과 유대관계를 위하여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총 4회 1,140,000원 상당의 육류를 구입([J][K][L] 생고기 전문점: [M][N]시 [O][P]동 소재)하여 예산의 목적과 다르게 사적으로 사용하였음

[표 6]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현황(2014. 1. 1. ~ 12. 31.)

구분	성명	사용일	금액(원)	업체명	비고
계	4		1,140,000		
사업	[A][B][C]	2014. 4. 7.	398,000	[J][K][L]네 생고기 전문점	
사업	"	2014. 5. 9.	251,000	"	
사업	"	2014. 8. 20.	280,000	"	
사업	"	2014. 8. 28.	211,000	"	

■ 사내참고  
 2014년 예산집행지침에 “업무추진비는 사업추진비와 기관운영비로 구분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사업추진비는 공사의 사업 및 업무와 관련한 유관기관 업무협의, 자료·조사 활동 및 유관기관 경조사비 등에 집행하고 기관운영비는 내부직원 격려, 간담회, 기타 기관(부서) 운영을 위한 소규모 지출 등의 소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집행하되, 현금지급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임직원행동강령」제8조(법규준수) “임직원은 직무 수행 시 각종 법령과 규정을 지키고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제20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에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되며, 같은 강령 제35조(투명한 회계관리)에 임직원은 회계기록 그 밖에 재무관리는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마. 복무규정(직장이탈금지) 위반

- ■■■■ □□□□(국토정보직 2급) 등 3인은 [표 7]과 같이 2014. 1. 24.부터 2015. 2. 3.까지 총 5회에 걸쳐 근무시간 중 스크린 골프를 하였고, 또한 위 □□□□은 [표 8]과 같이 2014. 12. 1.부터 2015. 1. 30.까지 ▨▨지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산띠 요가학원” 에 근무시간 중 2회에 걸쳐 출입하여 직장이탈 금지, 근무시간 내 사적인 업무의 금지를 위반하였음

[표 7] 스크린골프장 이용 현황(2014. 1. 24. ~ 2015. 2. 3.)

일시	시작시간	장소	동반자	비고
계	5회			
2014. 7. 4.	11: 30	▨▨▨골프	□□□□, ●●●●, ●●●●	
2014. 7. 18.	17: 30	”	”	
2014. 9. 3.	17: 30	”	”	
2014. 9. 26.	17: 10	”	”	
2014. 12. 16.	11: 00	”	”	

[표 8] 요가학원 이용현황(2014. 12. 1. ~ 2015. 1. 30.)

이용기간	횟수	장소	이용자	비고
2014. 12. 1. ~ 2015. 1. 30.	2회	산띠 요가학원	□□□□	

■ 사내참고

복무규정 제2조(준수사항)에 “7. 직장이탈금지: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4조(근무시간)에 “직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하고,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다.

「임직원행동강령」제8조(법규준수) “임직원은 직무 수행 시 각종 법령과 규정을 지키고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같은 강령 제41조(근무시간 내 사적인 업무의 금지)에 임직원은 근무시간 내 업무와 무관한 취미·종교·자선 활동 등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 1. 처분요구 사항 일람표

일련 번호	관계자	제 목	처분요구 종류			비고
			신분상	행정상	재정상(원)	
1	□□□□지사 ■ ■ ■ ■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및 집행 부적정 - 개인 복무관리 부적정	중징계 (강등)		1,200,000	회수
2	■ ■ ■ ■지사 ▷ ▷ ▷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및 집행 부적정	경징계 (감봉1월)		20,000	"
3	■ ■ ■ ■지사 ● ● ● ●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 개인 복무관리 부적정	경징계 (감봉1월)		149,200	"
4	□□□□지사 ● ● ● ●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 개인 복무관리 부적정	경징계 (감봉1월)		87,200	"
5	■ ■ ■ ■지사 ▷ ▷ ▷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및 집행 부적정	경징계 (견책)		124,500	"
6	△ △ △ △지사 ■ ■ ■ ■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경징계 (견책)		82,000	"
7	■ ■ ■ ■지사 ▶ ▶ ▶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경징계 (견책)		120,000	"
8	■ ■ ■ ■지사 □ □ □ □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경징계 (견책)		262,700	"
9	■ ■ ■ ■지사 ▲ ▲ ▲ ▲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경징계 (견책)		166,200	"
10	■ ■ ■ ■지사 △ △ △ △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경징계 (견책)		191,200	"
11	▲ ▲ ▲ ▲ ▲ ▲ ● ● ● ●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경징계 (견책)		98,200	"
12	▭ ▭ ▭ ▭ ▭지사 ▲ ▲ ▲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경징계 (견책)		220,700	"
13	■ ■ ■ ■지사 ▶ ▶ ▶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경징계 (견책)		529,200	"
14	■ ■ ■ ■지사 ▷ ▷ ▷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경징계 (견책)		70,000	"
15	■ ■ ■ ■지사 ■ ■ ■ ■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문책 (주의)		48,000	"
16	■ ■ ■ ■지사	- 여비교통비 집행 부적정			1,080,000	지급

## 2. 처분요구 사항 명세: 붙임 참조

#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

## 징계요구

제 목	예산의 집행 부적정 및 사적사용 등
관 계 기 관	■■■■본부
징 계 대상자	① ■■■■지사 국토정보직 2급 ◇◇◇ ② ■■지사 국토정보직 3급 ◆◆◆
징 계 종 류	강등(◇◇◇), 감봉 {◆◆◆(1개월)}
징 계 사 유	

위 사람들 중 ① ◇◇◇은 2014. 1. 24.부터 2015. 2. 3.까지 ■■■■본부 ■■지사(이하 “■■지사”라 한다.)에서, 2015. 2. 4.부터 같은 해 7. 31. 현재까지 ■■■■지사에서 지사의 기관운영 관리를 총괄하는 ●●●이고 ② ◆◆◆은 2015. 2. 4.부터 같은 해 7. 31. 현재까지 ■■지사의 기관운영 관리를 총괄하는 ●●● 업무를 담당하면서 각각 지사 운영·관리 및 소속 직원의 지휘·감독 직무를 수행하는 업무를 처리하였다.

### 1. ◇◇◇의 경우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르면 업무 운영상 기본이 되는 법규, 정관 및 규정을 지켜야 하고 근면 성실한 근무 자세로 맡은 바 직무를 신속·정확히 처리하여야 하며, 공사의 신용 또는 명예를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항상 자신의 신분과 직위를 인식하여 공직자로서 품위를 잃지 않아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4조에 따르면 직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하며,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2014년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공사의 사업 및 업무와 관련한 유관기관 업무협의를, 자료·조사 활동 및 유관기관 경조사비 등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특근매식비는 직원이 초과 근무한 날에 한하여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한국국토정보공사 임직원행동강령」 제20조에 따르면 임직원은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강령 제21조에 따르면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강령 제35조에 임직원은 회계기록 등 재무관리는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여비규정」 제2조에 따르면 임직원이 공사의 업무로 국내외에 출장하는 경우에 여비를 지급하고 같은 규정 제13조에 따르면 1일 출장의 경우 20,000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은 기관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위반하였다.

#### 가. 차량유지관리비에 관한 사항

위 사람은 2014. 1. 23.부터 2015. 2. 3.까지 [표 1]과 같이 차량유지관리비 예산집행 현황에 따르면 ○○카클리닉 세차장(경기 ㉮㉮시 ㉮㉮동 소재) 장부에 따라 지사 예산집행 지출결의서를 작성해야 하는데도 세차장 장부와 지사의 지

출결의서의 세차 횟수를 비교하면 총 72회 1,440,000원을 부당 집행하였기에 이는 임직원의 투명한 회계관리 원칙 준수를 위반하였다.

[표 1] 차량유지관리비 집행 현황(2014. 1. 1. ~ 2015. 7. 31.)

(단위: 횟수/ 원)

구분	세차장 장부	지출	초과지출	구분	세차장 장부	지출	초과지출
'14. 1월	11 (220,000)	18 (360,000)	140,000	1월			
2월	12 (240,000)	16 (320,000)	80,000	2월	10 (200,000)	16 (320,000)	120,000
3월	12 (240,000)	20 (400,000)	160,000	3월	10 (200,000)	19 (380,000)	180,000
4월	11 (220,000)	20 (400,000)	180,000	4월	7 (140,000)	18 (360,000)	220,000
5월	11 (220,000)	20 (400,000)	180,000	5월	12 (240,000)	17 (340,000)	100,000
6월	8 (160,000)	18 (360,000)	200,000	6월	6 (120,000)	16 (320,000)	200,000
7월	11 (220,000)	20 (400,000)	180,000	7월	5 (100,000)	16 (320,000)	220,000
8월	10 (200,000)	10 (200,000)	0				
9월	11 (220,000)	12 (240,000)	20,000				
10월	12 (240,000)	15 (300,000)	60,000				
11월	11 (220,000)	12 (240,000)	20,000				
12월	11 (220,000)	15 (300,000)	80,000				
'15. 1월	8 (160,000)	15 (300,000)	140,000				
합계	139 (2,780,000)	211 (4,220,000)	72 (1,440,000)	합계	50 (1,000,000)	102 (2,040,000)	52 (1,040,000)

※ ○○카크리닉 세차장부와 ㅁㅁㅁ지사 지출결의서(업무비\_차량유지비)에 의함

나. 특근매식비에 관한 사항

위 사람은 2015. 1. 1.부터 같은 해 2. 3.까지 [표 2]와 같이 직원이 초과 근무한 날에 한하여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근을 실시하지 않은 차장 ○○○ 등 총 59명에게 특근매식비 총 404,000원을 부당하게 지출하였다.

[표 2] 특근매식비 지출 현황(2015. 1. 1. ~ 7. 31.)

(단위: 명/ 원)

일자	직 급	성 명	특근여부	비 고
합계		59		404,000
2015. 1. 9	국토정보직 3급	○○○ 등 11	×	86,000
2015. 1. 12	국토정보직 3급	○○○ 등 11	×	86,000
2015. 1. 13	국토정보직 3급	○○○ 등 14	×	84,000
2015. 1. 16	국토정보직 5급	●●● 등 8	×	70,000
2015. 1. 19	국토정보직 5급	●●● 등 10	×	42,000
2015. 1. 20	국토정보직 5급	●●● 등 5	×	36,000

다. 여비교통비에 관한 사항

위 사람은 2014. 1. 24.부터 2015. 2. 3.까지 향후 ●●● 개인 성과연봉 계약 체결 시 좋은 연봉계약 체결을 위한다는 취지로 지적측량 일일 완료건수 2건 이하와 완료금액 1,500,000원 이하는 여비교통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여비교통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급된 여비교통비를 여입 하게 하는 등 총 15건 900,000원의 여비교통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3 참조]

[표 3] 여비교통비 미지출 현황(2014. 1. 24. ~ 2015. 7. 31.)

종목	토지소재지	출장일자	측량자	지출금액			비고
				정	오	차액	
합계	15건			900,000	0	900,000	
특현황 24호	●●동 366-11	'14. 2. 5.	●●● 등 3	60,000	0	60,000	미지출
경계 42호	○○동 435-108	'14. 2. 19.	●●● 등 3	60,000	0	60,000	"
경계 285호	●●동 산62-16	'14. 5. 7.	●●● 등 3	60,000	0	60,000	"
경계 299호	●●동 299	'14. 5. 7.	●●● 등 3	60,000	0	60,000	여입
특분할 24호	○○동 15-4	'14. 5. 12.	●●● 등 3	60,000	0	60,000	미지출
분할 204호	●●동 398-34	'14. 6. 17.	●●● 등 3	60,000	0	60,000	"
특분할 59호	●●동 82-3	'14. 11. 27.	○○○ 등 3	60,000	0	60,000	"
경계 695호	■■면 ■■리 390-84	'14. 12. 2.	●●● 등 3	60,000	0	60,000	"
특분할 61호	■●동 397-8	'14. 12. 3.	○○○ 등 3	60,000	0	60,000	"
분할 404	☆동 220-5	'14. 12. 8.	●●● 등 3	60,000	0	60,000	"
분할 475호	■●●동 501	'14. 12. 11.	●●● 등 3	60,000	0	60,000	"
분할 482호	□□□동 348	'14. 12. 18.	○○○ 등 3	60,000	0	60,000	"
분할 487	■●●동 산329-7	'14. 12. 30.	●●● 등 3	60,000	0	60,000	"
현황 130호	●●동 211-1	'14. 12. 30.	●●● 등 3	60,000	0	60,000	"
분할 17호	△△△동 435	'15. 1. 28.	●●● 등 3	60,000	0	60,000	"

또한 ◇◇◇은 개인 복무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위반하였다.

라. 차량유지관리비에 관한 사항

위 사람은 2014. 1. 24.부터 2015. 2. 3.까지 차량유지관리비 총 3회 60,000원을 사적으로 사용<sup>2)</sup>하여 공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었다.

마. 업무추진비

위 사람은 2014년도 冊冊지사에 업무추진비로 배정된 예산을 집행하면서 공

2) 2014. 4월(일자 미상), 7월(일자 미상), 12월(일자 미상)

사의 사업 및 유관 기관과의 업무추진 활동과 유대관계를 위하여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생고기 전문점(경기 ㉮㉮시 ㉮㉮동 소재)에서 총 4회 1,140,000원 상당의 육류를 구입하여 예산의 목적과 다르게 사적으로 사용하여왔다.

[표 4]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현황(2014. 1. 1. ~ 12. 31.)

구분	성명	사용일	금액(원)	업체명	비고
사업	◇◇◇	2014. 4. 7.	398,000	▲▲▲네 생고기 전문점	
사업	"	2014. 5. 9.	251,000	"	
사업	"	2014. 8. 20.	280,000	"	
사업	"	2014. 8. 28.	211,000	"	
계	4		1,140,000		

바. 복무규정 위반에 관한 사항

위 사람은 2014. 1. 24.부터 2015. 2. 3.까지 총 7회에 걸쳐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하여 스크린 골프장<sup>3)</sup>, 요가학원<sup>4)</sup>에 출입하는 등 근면 성실한 근무 자세로 맡은 바 직무를 신속·정확히 처리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였다.

2. ◇◇◇의 경우

「한국국토정보공사 임직원행동강령」 제20조에 따르면 임직원은 출장비, 업

3) 2014. 7. 4./ 2014. 7. 18./ 2014. 9. 3./ 2014. 9. 26./ 2014. 12. 16. 총 5회에 걸쳐 ●●● ◇◇◇의 요청으로 ▲▲▲, ㉮㉮과 동반하여 근무시간 중 ㉮㉮ 스크린 골프장(㉮㉮시 ㉮㉮동 소재)에 출입함  
 4) 2014. 12. 1.부터 2015. 1. 30.까지 지사와 같은 건물에 소재하고 있는 '㉮㉮ 요가학원'에 총 2회에 걸쳐 근무시간 중 출입하였음

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강령 제21조에 따라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강령 제35조에 따르면 임직원은 회계기록 그 밖에 재무관리는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여비규정」 제2조에 따르면 임직원이 공사의 업무로 국내외에 출장하는 경우에 여비를 지급하며 같은 규정 제13조에 1일 출장의 경우 20,000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2015년 「예산집행지침」에 의하면 특근매식비는 직원이 초과 근무한 날에 한하여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위 사람의 기관운영 소홀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을 위반하였다.

#### 가. 차량유지관리비에 관한 사항

위 사람은 2015. 2. 4.부터 같은 해 7. 31. 현재까지 위의 [표 1]과 같이 ○○카클리닉 세차장(경기 ㉨㉨시 ㉨㉨동 소재) 장부에 따라 지사 예산집행 지출결의서를 작성해야 하는데도 세차장 장부와 지사의 지출결의서의 세차 횟수를 비교하면 총 52회 1,040,000원을 부당 집행하였기에 이는 임직원의 투명한 회계 관리원칙 준수를 위반하였다.

#### 나. 특근매식비에 관한 사항

위 사람은 2015. 2. 4.부터 같은 해 7. 31. 현재까지 [표 5]와 같이 직원이 초

과 근무한 날에 한하여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근을 실시하지 않은 ●●● 등 총 28명에게 특근매식비 241,000원을 부당하게 집행하였다.

[표 5] 특근매식비 지출 현황(2015. 1. 1. ~ 7. 31.)

(단위: 명/ 원)

일자	직 급	성 명	특근여부	비 고
소계		28		241,000
2015. 2. 4	국토정보직 5급	●●● 등 6	×	39,000
2015. 2. 6	국토정보직 5급	●●● 등 7	×	69,000
2015. 2. 13	국토정보직 4급	●●● 등 8	×	71,000
2015. 2. 13	국토정보직 4급	●●● 등 7	×	62,000

다. 여비교통비에 관한 사항

위 사람은 2015. 2. 4.부터 같은 해 7. 31.까지 ㉔㉔●●●으로 근무하면서 ◇◇◇(전임 ●●●)의 업무 스타일을 유지하여 임직원이 공사의 업무로 국내외에 출장하는 경우에 여비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 3건 180,000원의 여비교통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6] 여비교통비 미지출 현황(2014. 1. 1. ~ 2015. 7. 31.)

(단위: 명/ 원)

종목	토지소재지	출장일자	측량자	지출금액			비고
				정	오	차액	
소계(◇◇◇)	3건			180,000	0	180,000	
경계 57호	●●●동 399	'15. 2. 16.	●●● 등 3	60,000	0	60,000	''
경계 71호	㉔㉔동 27	'15. 2. 24.	●●● 등 3	60,000	0	60,000	''
경계 449호	㉔㉔동 510-6	'15. 7. 29.	●●● 등 3	60,000	0	60,000	여입

또한 ◆◆◆은 개인 복무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위반하였다.

라. 차량유지관리비에 관한 사항

위 사람은 차량유지관리비 총 1회 20,000원을 사적으로 사용<sup>5)</sup>하여 공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었다.

따라서 위 ◇◇◇은 「한국국토정보공사 임직원행동강령」 제8조, 제20조, 제35조, 제41조, 「여비규정」 제13조, 「복무규정」 제2조, 제4조에, 위 ◆◆◆은 「한국국토정보공사 임직원행동강령」 제20조, 제35조 「여비규정」 제13조를 위배한 것에 해당한다.

이러한 행위는 기관운영 소홀과 개인복무 관리를 부적정하게 한 사실로 ◇◇◇의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인 경우, ◆◆◆의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사장(■■■■장)**은 「인사규정」 제51조 및 「징계규칙」 제8조에 따라 ◇◇◇(국토정보직 2급)을 **중징계(강등)** 처분하고, ◆◆◆(국토정보직 3급)은 **경징계(감봉1월)**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소속	직·성명	관리기간	담당업무	현 근무처
■■■지사	국토정보직 2급 ◇◇◇	'14. 1. 24. ~ '15. 2. 3.	업무총괄	■■■■지사
■■■지사	국토정보직 3급 ◆◆◆	'15. 2. 4. ~ 현재	업무총괄	■■■지사

5) 2015. 3월(일자 미상)

#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

## 징계요구

제 목 개인 복무관리 부적정 및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관 계 기 관 ㉹㉹㉹㉹본부

징 계 대상자 ① ㉹㉹지사 국토정보직 5급 ㉹㉹㉹

② ㉹㉹㉹㉹지사 국토정보직 5급 ▲▲▲

징 계 종 류 감봉 {㉹㉹㉹(1개월), ▲▲▲(1개월)}

징 계 사유

위 사람들 중 ① ㉹㉹㉹은 2014. 1. 24.부터 2015. 7. 31.현재까지 ㉹㉹㉹㉹본부 ㉹㉹지사(이하 “㉹㉹지사”라 한다.)에서 지적측량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② ▲▲▲은 2014. 1. 24.부터 2015. 2. 3.까지 ㉹㉹지사에서, 같은 해 2. 4.부터 7. 31. 현재까지 ㉹㉹㉹㉹지사에서 지적측량 민원업무를 담당하면서 각각 맡은 바 업무를 처리하였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임직원행동강령」 제8조에 따라 임직원은 직무 수행 시 각종 법령과 규정을 지키고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같은 강령 제20조에 따르면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강령 제41조에 따르면 임직원은 근무시간 내 업무와 무관한 취미·종교·자선 활동 등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있다.

또한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르면 업무 운영상 기본이 되는 법규, 정관 및

규정을 지켜야 하고 근면 성실한 근무 자세로 맡은 바 직무를 신속·정확히 처리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4조에 따르면 직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하며,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다.

## 1. □□□의 경우

그런데도 위 사람은 ■■■지사에 근무하던 중 차량유지관리비 총 4회 80,000원을 사적으로 사용<sup>6)</sup>하여 공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었으며 또한 총 5회에 걸쳐 근무시간 중 스크린 골프장을 출입<sup>7)</sup>하는 등 근면 성실한 근무 자세로 맡은 바 직무를 신속·정확히 처리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였다.

따라서 위 사람은 「임직원행동강령」 제8조, 제20조, 제41조, 「복무규정」 제2조, 제4조를 위배한 것으로 각각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

## 2. ▲▲▲의 경우

▲▲▲(국토정보직 5급)은 차량유지관리비 총 3회 60,000원을 사적으로 사용<sup>8)</sup>하여 공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었으며 위 ◇◇◇, □□□과 동행하여 총 5회에 걸쳐 근무시간 중 스크린 골프장을 출입<sup>9)</sup>하는 등 근면 성실한 근무 자세로 맡은 바 직무를 신속·정확히 처리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

6) 2014. 3월(일자 미상), 5월(일자 미상), 7월(일자 미상), 9월(일자 미상)

7) 2014. 7. 4./ 2014. 7. 18./ 2014. 9. 3./ 2014. 9. 26./ 2014. 12. 16. 총 5회에 걸쳐 ●●● ◇◇◇의 요청으로 근무시간 중 ⊕⊕⊕ 스크린 골프장(■■■시 ⊕⊕동 소재)에 출입함

8) 2014. 8월(일자 미상), 9월(일자 미상), 10월(일자 미상)

9) 2014. 7. 4./ 2014. 7. 18./ 2014. 9. 3./ 2014. 9. 26./ 2014. 12. 16. 총 5회에 걸쳐 ●●● ◇◇◇의 요청으로 근무시간 중 ⊕⊕⊕ 스크린 골프장(■■■시 ⊕⊕동 소재)에 출입함

탈하였다.

따라서 위 사람은 「한국국토정보공사 임직원행동강령」 제8조, 제20조, 제41조, 「복무규정」 제2조, 제4조를 위배된 것으로 각각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사장(■■■■장)은 「인사규정」 제45조 및 「징계규칙」 제8조에 따라 □□□(국토정보직 5급), ▲▲▲(국토정보직 5급)을 경징계(감봉1월)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소속	직·성명	관리기간	담당업무	현 근무처
■■■지사	국토정보직 5급 □□□	'14. 1. 24. ~ 현재	지적측량	■■■지사
■■■지사	국토정보직 5급 ▲▲▲	'14. 1. 24. ~ '15. 2. 3.	지적측량	■■■■지사

#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

## 징계요구

제 목	차량유지관리비 사적사용 등
관 계 기 관	■■■■본부
징 계 대상자	① ■■■지사 국토정보직 6급 ⊕⊕⊕ ② ■■지사 국토정보직 3급 ⊙⊙⊙ ③ ■■■지사 국토정보직 3급 ⊕⊕⊕ ④ ■■■지사 국토정보직 4급 ⊖⊖⊖ ⑤ ■■■지사 국토정보직 4급 ●●● ⑥ ■■■지사 국토정보직 4급 ●●● ⑦ □□□□□□ 국토정보직 5급 ▽▽▽ ⑧ ■■■■지사 국토정보직 5급 ▽▽▽ ⑨ ■■■지사 국토정보직 5급 △△△ ⑩ ■■■지사 국토정보직 5급 □□□
징 계 종 류	견책

### 징 계 사 유

위 사람들 중 ① ⊕⊕⊕는 2012. 2. 13.부터 2015. 7. 31. 현재까지 ■■■■본부 ■■■지사(이하 “■■■지사” 라 한다.)에서 근무한 직원으로 2015. 1. 1.부터 같은 해 7. 31. 현재까지 서무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은 2014년도 ■■■지사에 근무하였거나 현재 근무하는 직원으로 지적측량 민원업무를

담당하였다.

## 1. ㉠㉡㉢의 경우

「한국국토정보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제8조에 따라 임직원은 직무 수행 시 각종 법령과 규정을 지키고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같은 강령 제20조에 따르면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강령 제35조에 따르면 임직원은 회계기록 등 재무관리는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2015년 「예산집행지침」에 의하면 특근매식비는 직원이 초과 근무한 날에 한하여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위 사람은 [표 7]과 같이 2015. 1. 1.부터 같은 해 7. 31.까지 총 87명에 대하여 특근을 실시하지 않았는데도 특근매식비 총 645,000원을 부당하게 지출결의 하였으며 또한 개인 복무에 관한 위반 사항으로 차량유지관리비 총 5회 100,000원을 사적으로 사용<sup>10)</sup>하여 공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

10) 2014. 3월(일자 미상), 5월(일자 미상), 9월(일자 미상), 12월(일자 미상), 2015. 2월(일자 미상)

[표 7] 특근매식비 지출 현황(2015. 1. 1. ~ 7. 31.)

(단위: 명/ 원)

일자	직 급	성 명	특근여부	비 고
합계		87		645,000
2015. 1. 9	국토정보직 3급	○○○ 등 11	×	86,000
2015. 1. 12	국토정보직 3급	○○○ 등 11	×	86,000
2015. 1. 13	국토정보직 3급	○○○ 등 14	×	84,000
2015. 1. 16	국토정보직 5급	●●● 등 8	×	70,000
2015. 1. 19	국토정보직 5급	●●● 등 10	×	42,000
2015. 1. 20	국토정보직 5급	●●● 등 5	×	36,000
2015. 2. 4	국토정보직 5급	●●● 등 6	×	39,000
2015. 2. 6	국토정보직 5급	●●● 등 7	×	69,000
2015. 2. 13	국토정보직 4급	○○○ 등 8	×	71,000
2015. 2. 13	국토정보직 4급	○○○ 등 7	×	62,000

따라서 위 사람은 「한국국토정보공사 임직원행동강령」 제8조, 제20조, 제35조에 위배된 것으로 각각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

2.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의 경우

「한국국토정보공사 임직원행동강령」 제8조에 따라 임직원은 직무 수행 시 각종 법령과 규정을 지키고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같은 강령 제20조에 따르면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되어 있다.

그런데도 위 사람들은 개인 복무에 관한 위반 사항으로 차량유지관리비 총 72회 1,440,000원을 사적으로 사용<sup>11)</sup>하여 공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

따라서 위 사람은 「한국국토정보공사 임직원행동강령」 제8조, 제20조에 위 배된 것으로 각각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사장(■■■■장)**은 「인사규정」 제51조 및 「징계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정보직 6급) 등 10명을 **경징계(견책)**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소속	직·성명	관리기간	담당업무	현 근무처
■■■지사	국토정보직 3급 ○○○○	'13. 3. 4. ~ '15. 2. 3.	지적측량	■■■지사
■■■지사	국토정보직 4급 ●●●●	'13. 3. 4. ~ 현재	지적측량	■■■지사
■■■지사	국토정보직 4급 ●●●●	'14. 1. 24. ~ 현재	지적측량	■■■지사
■■■지사	국토정보직 5급 ▽▽▽	'13. 3. 4. ~ '15. 2. 3.	지적측량	□□□□□□□□
■■■지사	국토정보직 5급 ▽▽▽	'12. 2. 13. ~ '15. 2. 3.	지적측량	■●●●●지사
■■■지사	국토정보직 5급 △△△	'14. 1. 24. ~ 현재	지적측량	■■■지사
■■■지사	국토정보직 6급 ⊕⊕⊕	'12. 2. 13. ~ 현재	지적측량	■■■지사
■■■지사	국토정보직 3급 ⊕⊕⊕	'15. 2. 4. ~ 현재	지적측량	■■■지사
■■■지사	국토정보직 4급 ●●●●	'07. 3. 5. ~ 현재	지적측량	■■■지사
■■■지사	국토정보직 5급 □□□	'15. 2. 4. ~ 현재	지적측량	■■■지사

11) ○○○○(3회 60,000원), ⊕⊕⊕(6회 120,000원), ●●●●(11회 220,000원), ●●●●(6회 120,000원), ●●●●(6회 120,000원), ▽▽▽(4회 80,000원), ▽▽▽(9회 180,000원), △△△(24회 480,000원), □□□(3회 60,000원)

#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

## 문책(주의)요구

제 목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관 계 기 관 ○○○○○본부  
문 책 대상자 ○○○지사 국토정보직 5급 △△△  
문 책 종 류 주의  
문 책 사 유

위 사람은 공사에 1996. 7. 15. 입사하여 2015. 2. 4.부터 같은 해 7. 31. 현재 까지 ○○○지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지적측량 민원업무를 처리하였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임직원행동강령」 제20조에 따르면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도 위 사람은 차량유지관리비 총 1회 20,000원을 사적으로 사용하여<sup>12)</sup> 공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었다.

**조치할 사항** 사장(○○○○장)은 △△△(국토정보직 5급)을 「직원경고 등 처분에 관한 지침」에 따라 문책(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소속	직·성명	관리기간	담당업무	현 근무처
◎◎지사	국토정보직 5급 △△△	'15. 2. 4. ~ 현재	지적측량	○○○지사

12) 2014. 9월(일자 미상),

#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

## 시정요구(회수) · 개선

제 목 차량유지관리비 집행 부적정

관 계 기 관 〇〇〇〇본부 〇〇지사, 〇〇〇〇처

내 용

〇〇〇〇본부 〇〇지사(이하 “〇〇지사”라 한다.)는 지적측량 업무처리를 위하여 총 4대의 업무용임차차량을 운용하고 차량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전문세차장을 지정하여 월 100,000원 범위 내에서 1회 세차 당 20,000원씩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sup>13)</sup>하여 세차를 실시하고 있다.

「업무용 임차차량 운영지침」 제9조에 따르면 차량관리자는 차량을 깨끗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월 1회 이상 세차를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세차 이외에 차량유지관리에 필요한 물품 등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한국국토정보공사 임직원행동강령」 제20조에 따르면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〇〇지사의 차량유지관리비 예산집행 현황은 [표 8]과 같다. 2014. 1. 23.부터 2015. 7. 31. 까지 〇〇카크리닉 세차장(〇〇시 〇〇동 소재)에서 실시한 세차 현황과 지사 차량유지관리비 예산 집행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14년도 65회 1,300,000원, 2015년도 59회 1,180,000원이 과다 지출(개인세차: 480,000원, 세차장

13) 〇〇지사-281(2014. 1. 23.) 업무용임차차량 운영에 따른 세차장 지정  
〇〇지사-2813(2014. 8. 14.) 업무용임차차량 운영에 따른 지정세차장 사업자등록 변경  
〇〇지사-53(2015. 1. 6.) 업무용임차차량 운영에 따른 세차장 지정

잔고: 708,000원)되어 2015. 7. 31. 까지 총 2,480,000원을 부당하게 지출하여 공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었다.

[표 8] 차량유지관리비 집행 현황(2014. 1. 1. ~ 2015. 7. 31.)

(단위: 횟수, 원)

구분	세차장장부	지출	초과지출	비고	구분	세차장장부	지출	초과지출	비고
'14. 1.	11 (220,000)	18 (360,000)	140,000		'15. 1.	8 (160,000)	15 (300,000)	140,000	
2	12 (240,000)	16 (320,000)	80,000		2	10 (200,000)	16 (320,000)	120,000	
3	12 (240,000)	20 (400,000)	160,000		3	10 (200,000)	19 (380,000)	180,000	
4	11 (220,000)	20 (400,000)	180,000		4	7 (140,000)	18 (360,000)	220,000	
5	11 (220,000)	20 (400,000)	180,000		5	12 (240,000)	17 (340,000)	100,000	
6	8 (160,000)	18 (360,000)	200,000		6	6 (120,000)	16 (320,000)	200,000	
7	11 (220,000)	20 (400,000)	180,000		7	5 (100,000)	16 (320,000)	220,000	
8	10 (200,000)	10 (200,000)	0						
9	11 (220,000)	12 (240,000)	20,000						
10	12 (240,000)	15 (300,000)	60,000						
11	11 (220,000)	12 (240,000)	20,000						
12	11 (220,000)	15 (300,000)	80,000						
합계	131 (2,620,000)	196 (3,920,000)	65 (1,300,000)		합계	58 (1,160,000)	117 (2,340,000)	59 1,180,000	

※ ○○카크리닉 세차장부와 ㅁㅁㅁ지사 지출결의서(업무비\_차량유지비)에 의함

따라서 차량유지관리비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통제 장치를 마련·강화하는 등 「업무용 임차차량 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청렴하고 깨끗한 윤리관을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 조치할 사항

### [시정(회수)]

■■■■본부장(■■■■●●●)은 「한국국토정보공사 임직원행동강령」 제20조에 따라 차량유지관리비 예산의 목적 외 사용분 2,480,000원을 회수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선]

사장(〇〇〇〇처장)은 차량유지관리비 집행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용 임차차량 운영지침」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개인차량 세차 현황(2014. 1. 1. ~ 2015. 7. 31.)

(단위: 세차 횟수/ 원)

년도	성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2014	◇◇◇				1			1					1	3/ 60,000
	○○○					1		1					1	3/ 60,000
	●●●		1	1	1	1		1	1	1	1	1	1	10/ 200,000
	●●●		1						1	1			1	4/ 80,000
	●●●						1	1		1		1		4/ 80,000
	▲▲▲								1	1	1			3/ 60,000
	▽▽▽		1	1		2								4/ 80,000
	ㅁㅁㅁ			1		1		1		1				4/ 80,000
	▽▽▽		1	1		1	1		1	1		1	1	8/ 160,000
	▷▷▷		1	2	1	2	1	2	2	2	1	2	1	17/ 340,000
	ㄱㄱㄱ			1		1				1			1	4/ 80,000
	△△△									1				1/ 20,000
합계														65/ 1,300,000
2015	●●●				1									1/ 20,000
	●●●		1					1						2/ 40,000
	●●●					1	1							2/ 40,000
	▽▽▽		1											1/ 20,000
	▷▷▷	1	1	1	1	1	1	1						7/ 140,000
	ㄱㄱㄱ		1											1/ 20,000
	㉺㉺㉺		1	1	1	1	1	1						6/ 120,000
	□□□			1	1		1							3/ 60,000
	◆◆◆			1										1/ 20,000
합계														24/ 480,000

※ 자료재구성: 세차장 잔고와 8,000원이 차이나는 것은 해당 세차 단가 차이로 기인함

#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

## 시정요구(회수)

제 목 특근매식비 부당 집행

관 계 기 관 〇〇〇〇본부 〇〇지사

내 용

공사는 직원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1인당 월 70,000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특근매식비를 집행하고 있다.

2015년 「예산집행지침」에 의하면 특근매식비는 직원이 초과 근무한 날에 한하여 배정된 월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임 2] 특근매식비 지출 현황과 같이 2015. 1. 1.부터 같은 해 7. 31.까지 〇〇〇(국토정보직 3급) 등 총 87명에게 특근을 실시하지 않았는데도 특근매식비 총 645,000원을 부당하게 집행하였다.

**조치할 사항** 〇〇〇〇본부장(〇〇〇〇)은 2015년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특근매식비 예산의 목적 외 사용분 645,000원을 회수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 특근매식비 지출 현황

(단위: 원)

일자	직 급	성 명	매식비 사용액	특근여부	비 고
2015.1.9	국토정보직 3급	○○○	8,000	×	
“	국토정보직 5급	●●●	8,000	×	
“	국토정보직 5급	* * *	8,000	×	
“	국토정보직 4급	○○○	8,000	×	
“	국토정보직 5급	▽▽▽	8,000	×	
“	국토정보직 5급	▲▲▲	8,000	×	
“	국토정보직 4급	○○○	8,000	×	
“	국토정보직 5급	□□□	8,000	×	
“	국토정보직 5급	▽▽▽	8,000	×	
“	국토정보직 5급	※※※	8,000	×	
“	국토정보직 6급	㉠㉠㉠	6,000	×	86,000
2015.1.12	국토정보직 3급	○○○	8,000	×	
“	국토정보직 5급	●●●	8,000	×	
“	국토정보직 5급	* * *	8,000	×	
“	국토정보직 4급	○○○	8,000	×	
“	국토정보직 5급	▽▽▽	8,000	×	
“	국토정보직 5급	△△△	8,000	×	
“	국토정보직 4급	○○○	8,000	×	
“	국토정보직 5급	□□□	8,000	×	
“	국토정보직 5급	▽▽▽	8,000	×	
“	국토정보직 5급	※※※	8,000	×	
“	국토정보직 6급	㉠㉠㉠	6,000	×	86,000
2015.1.13	국토정보직 3급	○○○	6,000	×	
“	국토정보직 5급	●●●	6,000	×	
“	국토정보직 5급	* * *	6,000	×	
“	국토정보직 4급	○○○	6,000	×	
“	국토정보직 5급	▽▽▽	6,000	×	
“	국토정보직 5급	△△△	6,000	×	
“	국토정보직 4급	○○○	6,000	×	
“	국토정보직 5급	▽▽▽	6,000	×	
“	국토정보직 5급	▲▲▲	6,000	×	
“	국토정보직 4급	○○○	6,000	×	
“	국토정보직 5급	□□□	6,000	×	
“	국토정보직 5급	▽▽▽	6,000	×	
“	국토정보직 5급	※※※	6,000	×	
“	국토정보직 6급	㉠㉠㉠	6,000	×	84,000
2015.1.16	국토정보직 5급	●●●	9,000	×	
“	국토정보직 5급	* * *	9,000	×	
“	국토정보직 4급	○○○	9,000	×	
“	국토정보직 5급	▽▽▽	9,000	×	
“	국토정보직 5급	▲▲▲	9,000	×	
“	국토정보직 4급	○○○	9,000	×	
“	국토정보직 5급	□□□	8,000	×	
“	국토정보직 5급	▽▽▽	8,000	×	70,000

일자	직 급	성 명	매식비 사용액	특근여부	비 고
2015.1.19	국토정보직5급	●●●	4,200	×	
“	국토정보직5급	* * *	4,200	×	
“	국토정보직4급	○○○	4,200	×	
“	국토정보직5급	▽▽▽	4,200	×	
“	국토정보직5급	△△△	4,200	×	
“	국토정보직4급	●○○	4,200	×	
“	국토정보직5급	▲▲▲	4,200	×	
“	국토정보직4급	●○○	4,200	×	
“	국토정보직5급	□□□	4,200	×	
“	국토정보직5급	▽▽▽	4,200	×	42,000
2015.1.20	국토정보직5급	●●●	7,000	×	
“	국토정보직5급	* * *	7,000	×	
“	국토정보직5급	▽▽▽	7,000	×	
“	국토정보직4급	●○○	8,000	×	
“	국토정보직5급	□□□	7,000	×	36,000
2015.2.4	국토정보직5급	●●●	6,500	×	
“	국토정보직4급	○○○	6,500	×	
“	국토정보직5급	△△△	6,500	×	
“	국토정보직5급	△△△	6,500	×	
“	국토정보직5급	▽▽▽	6,500	×	
“	국토정보직6급	⊕⊕⊕	6,500	×	39,000
2015.2.6	국토정보직5급	●●●	10,000	×	
“	국토정보직5급	□□□	10,000	×	
“	국토정보직4급	●○○	10,000	×	
“	국토정보직5급	▲▲▲	10,000	×	
“	국토정보직4급	●○○	10,000	×	
“	국토정보직5급	□□□	10,000	×	
“	국토정보직5급	* * *	9,000	×	69,000
2015.2.13	국토정보직4급	○○○	9,000	×	
“	국토정보직5급	▽▽▽	9,000	×	
“	국토정보직5급	△△△	9,000	×	
“	국토정보직4급	●○○	9,000	×	
“	국토정보직5급	▲▲▲	9,000	×	
“	국토정보직4급	●○○	9,000	×	
2015.2.13	국토정보직5급	□□□	9,000	×	
“	국토정보직5급	* * *	8,000	×	71,000
2015.2.17	국토정보직4급	○○○	9,000	×	
“	국토정보직5급	▽▽▽	9,000	×	
“	국토정보직5급	△△△	9,000	×	
“	국토정보직5급	▲▲▲	9,000	×	
“	국토정보직4급	●○○	9,000	×	
“	국토정보직5급	□□□	9,000	×	
“	국토정보직5급	* * *	8,000	×	62,000
계			645,000		

[붙임 3] 특근매식비 세부 지출 현황(2015. 1. 1. ~ 7. 31.)

(단위: 건/ 원)

직·성명	횟수	금액	비고
국토정보직 3급 ○○○○	3	22,000	
국토정보직 4급 ●●●●	6	46,200	
국토정보직 4급 ●●●●	6	42,700	
국토정보직 4급 ●●●●	9	71,200	
국토정보직 5급 △△△	7	49,200	
국토정보직 5급 ▼▼▼ <sup>1</sup>	6	48,000	
국토정보직 5급 ▽▽▽	3	18,200	
국토정보직 5급 * * * <sup>1</sup>	9	67,200	
국토정보직 5급 ※※※ <sup>1</sup>	3	22,000	
국토정보직 5급 ▲▲▲	4	27,200	
국토정보직 5급 ▽▽▽	6	40,700	
국토정보직 5급 □□□	1	10,000	
국토정보직 5급 ▢▢▢	9	69,200	
국토정보직 5급 △△△	3	28,000	
국토정보직 5급 ●●● <sup>1</sup>	8	58,700	
국토정보직 6급 ⊕⊕⊕	4	24,500	
합계	87	645,000	

※ ▼▼▼<sup>1</sup>, \* \* \*<sup>1</sup>, ※※※<sup>1</sup>, ●●●<sup>1</sup> 등 4명(195,900원)은 특근매식비 회수 요건만 해당

#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

## 시정요구(회수)

제 목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관 계 기 관 〇〇〇〇본부 〇〇지사

내 용

공사는 기관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기관 운영을 위하여 업무추진비를 사업추진비와 기관운영비로 구분하여 집행하고 있다.

2014년 「예산집행지침」에 업무추진비는 사업추진비와 기관운영비로 구분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사업추진비는 공사의 사업 및 업무와 관련한 유관기관 업무협약, 자료·조사 활동 및 유관기관 경조사비 등에 집행하고 기관운영비는 내부직원 격려, 간담회, 기타 기관(부서) 운영을 위한 소규모 지출 등의 소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집행하되, 현금지급(유가증권은 포함)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한국국토정보공사 임직원행동강령」 제20조에 따르면 임직원은 출장비·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표 9]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현황(2014. 1. 1. ~ 12. 31.)

구분	사용자	사용일	금액(원)	업체명	비고
사업	◇◇◇	2014.4.7	398,000	▲▲▲네 생고기 전문점	
사업	"	2014.5.9	251,000	"	
사업	"	2014.8.20	280,000	"	
사업	"	2014.8.28	211,000	"	
계	4		1,140,000		

●●● ◇◇◇은 [표 9]와 같이 2014년도 ㉠㉠지사에 배정된 예산을 집행하면서 공사의 사업 및 유관 기관과의 업무추진 활동과 유대관계를 위하여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네 생고기 전문점<sup>14)</sup>에서 총4회 1,140,000원 상당의 육류를 구입하여 예산의 목적과 다르게 사적으로 사용하였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2014년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업무추진비 예산의 목적 외 사용분 1,140,000원을 회수하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경기도 ㉠㉠시 ㉠㉠동 소재

#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

## 시정요구(지급)

제 목 여비교통비 지출업무 처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〇〇〇〇본부 〇〇지사

내 용

〇〇〇〇본부 〇〇지사에서는 직원이 업무나 교육 등으로 출장을 가는 때에는 「출장 여비」를 지급하고 있다.

「여비규정」 제2조에 따르면 임직원이 공사의 업무로 국내외에 출장하는 경우에 여비를 지급하며 같은 규정 제13조에 1일 출장의 경우 20,000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한국국토정보공사 임직원행동강령」 제21조에 따라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표 10] 현황과 같이 〇〇〇 〇〇〇은 2014. 1. 24.부터 2015. 2. 3.까지 향후 〇〇〇 개인 성과연봉 계약 체결 시 좋은 연봉계약 체결을 위한다는 취지로 지적측량 일일 완료건수 2건 이하와 완료금액 1,500,000원 이하는 여비교통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여비교통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급된 여비교통비를 여입 하게 하는 등 총 15건 900,000원의 여비교통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〇〇〇 〇〇〇은 2015. 2. 4.부터 같은 해 7. 31.까지 〇〇〇으로 근무하면서 〇〇〇(전임 〇〇〇)의 업무 스타일을 유지하여 총 3건 180,000원의 여비교통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